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6. 7. 민병덕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8. 19.)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병덕의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과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는가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의 대상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민병덕의원 · 송기현의원 · 오세희의원 · 박지혜의원 · 구자근의원 · 박성민의원 · 박성훈의원 · 이철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